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20. 03



2. 주민의견 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함.

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및 설명회

가. 공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294호(2019년 09월 18일)
- 일간신문 : 국민일보(2019년 09월 18일)
- 지역신문 : 충청투데이(2019년 09월 18일)

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09월 18일(수) ~ 2019년 10월 21일(월)(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아산시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다. 설명회

- 일시 : 2019년 10월 4일(금) 오후 2시
- 장소 : 아산시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약 75명(참석자 명단 기준)

라. 공람내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문
-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고서

마. 의견 제출 기간 및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19년 09월 18일(수) ~ 2019년 10월 28일(월)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팩스, 전자우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고 게시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인사발령
- 일자리정보
- 자격시험안내
- 입찰안내
- 사전규격공고
- 정부포상
- 정부정책영상

○ 공지사항 인내 품

부서: 부서찾기
 등록일자: 2018-09-18 ~ 2019-09-18 (예: 2009-02-08)
 주제어: 작성자 제목 내용 검색 >

총 1382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자	담당부서	조회
1382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254)	2019-09-18	기술정책과	33
1381	아산당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2019-09-18	도시활력지원과	49
1380	제871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218)	2019-09-18	기술정책과	33
1379	녹색건축유공자 모집 공고	2019-09-18	녹색건축과	40
1378	제872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236)	2019-09-18	기술정책과	34
1377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2019-09-17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115
1376	부동사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사실 공고(이지스엠에프용담)	2019-09-17	부동산산업과	28
1375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경주동남 A-38L)	2019-09-17	공공택지관리과	90
1374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93)	2019-09-17	신교통서비스과	102
1373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2019-09-17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104

제목 아산당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정지석 전화번호 044-201-3740 등록일 2019-09-18 조회 50

첨부파일 1 아산당정2지구_주민의견_제출서_양식.hwp (14Kbyte) [바로보기](#)

첨부파일 2 아산당정2지구_전략환경영향평가_초안_요약서.pdf (1291Kbyte) [바로보기](#)

첨부파일 3 아산당정2지구_전략환경영향평가서_초안_공람_및_설명회_개최_공고문.hwp (14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9-129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294호

**아산당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당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9. 18.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평가서 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명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위치	• 면형	
	소재지	면적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선문로221번길 14)	3,571,810㎡
협의대상 (협의관련법령)	• 행정계획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사업구분	도시개발 / 도시개발구역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규모 : 3571810㎡ • 사업비 : 2211950 백만원	

초안공람 주민의견수렴

■ 협의업무 담당

협의기관	환경부	담당자	김익수
담당부서	환경평가과	E-mail	kis4020@korea.kr
전화번호	044-201-7292	Fax번호	044-201-7304

■ 초안공람

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탕정2 초안) 00000 표지 및 목차.pdf • (아산탕정2 초안) 01000 요약문.pdf • (아산탕정2 초안) 02000 개발기본계획의 개요.pdf • (아산탕정2 초안) 03000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대안.pdf • (아산탕정2 초안) 04000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pdf • (아산탕정2 초안) 05000 지역개발.pdf • (아산탕정2 초안) 0600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pdf • (아산탕정2 초안) 07000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pdf • (아산탕정2 초안) 08000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한 주민 동의 의견.pdf • (아산탕정2 초안) 09000 계획의 적정성.pdf • (아산탕정2 초안) 10110 생물다양성 서식지.pdf • (아산탕정2 초안) 10120 지형 및 생태축 보전.pdf • (아산탕정2 초안) 10130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df • (아산탕정2 초안) 10140 수환경의 보전.pdf • (아산탕정2 초안) 10211 기상.pdf • (아산탕정2 초안) 10212 대기질.pdf • (아산탕정2 초안) 10214 온실가스.pdf • (아산탕정2 초안) 10215 토양.pdf • (아산탕정2 초안) 10216 소음진동.pdf • (아산탕정2 초안) 1022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pdf • (아산탕정2 초안) 1022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pdf • (아산탕정2 초안) 10311 토지이용.pdf • (아산탕정2 초안) 10312 인구주거.pdf • (아산탕정2 초안) 10313 산업.pdf • (아산탕정2 초안) 10314 밀조장해.pdf • (아산탕정2 초안) 11000 종합평가.pdf • (아산탕정2 초안) 10213 약취.pdf • (아산탕정2 초안) 12000 부록.pdf 		
초안 공고일	2019.09.18	초안공람 기간	2019.09.18 ~ 2019.10.21
공람 장소	아산시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6)		
설명회 일시	2019년 10월 04일(금) 14:00		
설명회 장소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6)		
의견제출 기간	2019.09.18 ~ 2019.10.28		
부서명	전화번호		

국민일보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음력 8월 20일) 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294호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명 :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 나.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당정면 일원
- 다. 계획규모 : 3,571,810㎡
- 라.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19. 09. 18.(수) ~ 2019. 10. 21.(월)-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아산시 당정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아산시 당정면 당정면로 36)
- 다.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문 (공람장소 비치)

3. 설명회 개최

- 가. 개최일시 : 2019년 10월 4일(금) 오후 2시
- 나. 개최장소 : 아산시 당정면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아산시 당정면 당정면로 36)

4. 의견 제출기간 및 범위, 방법 등

- 가. 제출기간 : 2019. 09. 18.(수) ~ 2019. 10. 28.(월)
- 나. 제출범위 : 해당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과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다. 제출방법

- 1)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 2) 팩 스 : 044-201-5657 3) 전자우편 : js5143@korea.kr
- 라. 작성서식 : 주민의견 제출서(공람장소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비치·게시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 활용)

5. 기타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과 주민의견 제출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ass.go.kr) 국민참여-평가서초안공람-전략환경영향평가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협력지원과(044-201-3740)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7)으로 문의

충청투데이

2019년 9월 18일 (음력 8월 20일) 수요일 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294호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18.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명 :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 나.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당정면 일원
- 다. 계획규모 : 3,571,810㎡
- 라.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19. 09. 18.(수) ~ 2019. 10. 21.(월)-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나. 공람장소 : 아산시 당정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아산시 당정면 당정면로 36)
- 다.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문(공람장소 비치)

3. 설명회 개최

- 가. 개최일시 : 2019년 10월 4일(금) 오후 2시
- 나. 개최장소 : 아산시 당정면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아산시 당정면 당정면로 36)

4. 의견 제출기간 및 범위, 방법 등

- 가. 제출기간 : 2019. 09. 18.(수) ~ 2019. 10. 28.(월)
- 나. 제출범위 : 해당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과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다. 제출방법

- 1)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 2) 팩 스 : 044-201-5657, 3) 전자우편 : js5143@korea.kr
- 라. 작성서식 : 주민의견 제출서(공람장소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비치·게시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 활용)

5. 기타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과 주민의견 제출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ass.go.kr) 국민참여-평가서초안공람-전략환경영향평가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협력지원과(044-201-3740)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7)으로 문의.

주민설명회 전경사진



2.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결과

가. 주민의견서 제출현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서 접수 현황 : 총 65건

구 분	합 계			공람장소(아산시)			전자우편 등(국토부)		
	계	공청회		계	공청회		계	공청회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주민의견서	65	63	2	49	48	1	16	15	1

나. 주민의견 수렴 결과

○ 주민의견 제출기한 내 접수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의견수	공청회 요구
1	○ 구역지정 반대 - 일방적 전담수용, 대책마련 필요, 현시세 보상	43	43
2	○ 동산리 일대 제척	9	9
3	○ 토지이용계획 - 공원녹지율 부족, 도서관 누락, 취락지구 및 주변임야 포함개발, 매곡천변 녹지 일부 단절	6	6
4	○ 공장제척(호산리)	3	3
5	○ 택배제척(동산리)	1	1
6	○ 성원특장 이전곤란(매곡리)	1	1
7	○ '98년 아산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추진요구	1	-
8	○ 이주자택지 조성	1	-
소 계		65	63

다. 공청회 개최 여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이므로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실시.
- 공청회 필요 : 63명(의견제출 주민 총수(65명)의 96.9%)

2.3 공청회 개최

가. 공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70호(2019년 10월 21일)
- 일간신문 : 경향신문(2019년 10월 21일)
- 지역신문 : 충청투데이(2019년 10월 21일)

나.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인원

- 개최일시 : 2019년 11월 5일(화) 18:00
- 공람장소 : 아산시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약 71명(참석자 명부 기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고 게시

국토교통부 **보다 나은 정부** 국가상징 알리기

통합검색 검색결과이 어린이 청소년마당 ENGLISH

주요도시기금 | 콜버스 | 아파트 | 공공분양 | 도시주역

정보공개 국민마당 국토교통소식 **알림마당** 정보마당 정책마당 기관소개 전체메뉴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인사발령 일자리정보 자격시험안내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정부포상 정부정책영상

부서: 부서선택

등록일자: 2018-10-21 ~ 2019-10-21 (예: 2009-02-08)

주제어: 작성자 제목 내용 검색

총 1435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자	담당부서	조회
1435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2019-10-21	도시활력지원과	49
1434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2019-10-21	공공역지관리과	50
1433	이천?윤경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19-10-21	철도건설과	47
1432	제875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226)	2019-10-21	기술정책과	32
143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2019-10-21	교통안전복지과	6
1430	2019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2019-10-18	비상안전기획관	161
1429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19-10-18	철도건설과	176
1428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257)	2019-10-18	기술정책과	203
1427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이지스엠에프용답)	2019-10-17	부동산산업과	42
1426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	2019-10-17	부동산산업과	65

제목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정지석 전화번호 044-201-3740 등록일 2019-10-21 조회 50

첨부파일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hwp (12Kbyte) [바로보기](#)

첨부파일 2 의견진술자_추천서(3).hwp (1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9-147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70호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1.

국토교통부장관

신문공고(경향신문)

경향신문

kyunhyang.com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70호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1.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명 :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 나.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탕정면 일원
- 다. 계획규모 : 3,571,810㎡
- 라.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가. 개최일시 : 2019년 11월 5일(화) 18:00
- 나. 개최장소 : 아산시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6)

3. 기타사항

- 가.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19년 10월 29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5657, E-mail jjs5143@korea.kr)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문공고(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www.cctoday.co.kr

2019년 10월 21일(음력 9월 23일) 월요일 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70호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명 :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 나.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탕정면 일원
- 다. 계획규모 : 3,571,810㎡
- 라.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가. 개최일시 : 2019년 11월 5일(화) 18:00
- 나. 개최장소 : 아산시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6)

3. 기타사항

- 가.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19년 10월 29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5657, E-mail jjs5143@korea.kr)로 제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전경사진



2.4 의견 수렴 결과

2.4.1 초안공람 주민의견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김OO 외 12명	○ 구역지정(안)에 반대합니다. 평생을 살아온 터전인 전답을 강제 수용당하고 텃밭까지 싹 수용해 가면 흙을 파며 농사지으며 살아온 방식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은 상상만 해도 크나큰 억압이자 폭력행위입니다.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추진 중 해제된 지역 및 주변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금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역경계에 인접한 거주민의 주거환경과 생계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류OO 외 10명	○ 도시개발 구역지정(안)에 반대합니다. 아산시는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계획(안)을 철회하고 LH는 주민들과 소통 및 동의를 거쳐 진행하십시오	○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할 계획임.	
이OO 외 8명	○ 구역지정(안)에 반대합니다. 기형적인 구역설정도를 보며 LH의 이기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신뢰를 잃었습니다. 주택만 남기고 전답과 텃밭까지 수용해가는 LH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척된 동산1리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계를 고려하여 다른 마을처럼 전답과 텃밭을 함께 제척시켜 주십시오.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추진 중 해제된 지역 및 주변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으며, 구역경계에 인접한 거주민의 주거환경과 생계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OO 외 5명	○ 구역지정(안)에 반대합니다. 아산탕정지구를 개발지구 지정, 해지 또다시 재지정을 반복하며 LH는 동산 1리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말 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혀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다시 강제수용이라니 사업시행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국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게 몇 번의 피해를 입히고 제대로 된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됩니다! 꼭 해야 한다면 공시시가에 대해 현시세로 정상화하고 시작하십시오!	○ 본 사업은 탕정지구 해제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추진되는 민간의 무분별한 개발문제에 시급히 대응하고, 공원·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금 산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인된 감정평가업자(3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강OO 외3명	<p>○전답만을 수용하면 대부분이 고령자인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는데 이직이나 생계수단 마련이 어렵습니다. 이는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의 침해입니다. 무엇으로 생활을 하란 말입니까?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p>	<p>○본 사업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으나 경계 설정에 대하여 마을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하여 취약지구는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p>	
류OO	<p>○강제수용 왜말입니까 단 한평의 땅이라도 거저 지킨 것은 없습니다. 농지 농토에서 엄청난 돈이 나오는것도 아닌데, 덜 쓰고, 덜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수천평의 땅을 지킬수 없었습니다. 몇 십년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매매 한번, 목돈 한번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수십년 동안 굶주려가며 내땅을 지킨 결과가 강제 수용이라니, 누구를 위한 강제수용입니까. 마을, 주거주택과 농토를 남겨 놓으십시오. 이 나이에 이직도 할 수 없고, 삶이 터전인 농지를 남겨 놓아야 생계수단을 이어갈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으로 생활을 하란 말입니까?</p>	<p>○본 사업은 탕정지구 해제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추진되는 민간의 무분별한 개발문제에 시급히 대응하고, 공원·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역경계에 인접한 거주민의 주거환경과 생계대책은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p>	
이OO	<p>○OO택배 영업규정상 탕정면을 벗어날 수 없으며, OO물류 업체를 상대로 영업권을 유지되고 있습니다. 18톤,15톤,11톤 화물트럭이 수 차례씩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 주차장이 1천평은 넘어야 최소한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도시개발로 인하여 탕정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화물물류센터로 옮기는 그 자체가 사형선고입니다. 엄청난 세월을 행위제한에 묶여서 말뚝 하나, 천막 한평도 못 고치고, 자연과 싸우면서 모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늙으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니 참고 살다보면 좋은날이 있겠지 라는 희망과 젊음이 있었는데 이 늦은 나이에 다시 20년 전 세월로 되돌아가라 하시면 차라리 죽어 없어지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신지요. 이 자리에 머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p>	<p>○본 사업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 및 공공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고 충분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의견을 주신 보상, 재정착방안 등에 대한 사안은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OO	<p>○ 어느날 갑자기 이해가 안되는 도시개발 그림을 가지고 와서 전제산인 공장과 논을 내놓으라 합니다</p> <p>환경영향평가에서 LH 부장님께 말씀드렸드시 화산리 000-O 000-O 000-O 000-O은 저희 3형제 공장입니다 탕정농공단지와 농심공장은 처음부터 빼주셨더군요 저의 공장은 대지 1300평에 건물 450평입니다 제외시켜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p>	<p>○ 본 사업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 및 공공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고 충분한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의견을 주신 보상, 재정착방안 등에 대한 사안은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p>	
김OO	<p>1.개발구역 축소 문제</p> <p>1998년 지구지정된 2단계 중 취소된 부분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p> <p>당초 지구지정을 믿고 대출을 받아 대토한 농민 등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유일한 방법은 당초 안 대로 추진하는 것임.</p> <p>다만 개발구역은 최대한 원안대로 하되 용도는 현재의 복합도시형으로 하면 될 것임.</p> <p>2.현안대로 추진할 경우 보완사항</p> <p>개발구역 경계선에서 동산리, 호산리, 덕지리 등 경계밖에 있게되는 자연부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 또는 신설하는 안을 당연히 추가하여야 함.</p> <p>이런 경우 주민들의 불만도 훨씬 줄어들 것임.</p>	<p>○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다수의 택지·도시개발·산업단지 등이 추진중으로 이전처럼 50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주택·산업용지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p> <p>○ 향후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주변 지역 연계방안, 해제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등을 수립·제시할 예정임.</p>	
류OO 외 1명	<p>○ 토지이용계획(안)녹지(공원)비율이 11.3%로 법적 기준 12%이상에 미달하고 타 지역 공공택지 개발지구 녹지 비율 20~30%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야는 수용하지 않고 있어 자연공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p>	<p>○ 토지이용계획(안) 공원·녹지율은 28.8% (하천등 포함)으로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적정한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도록 할 계획임.</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OO	<p>○명품 도시를 만든다는 이유로 나의 소중한 재산과 삶의 터전을 어느날 갑자기 아산시,LH에서 강제수용을 하려 합니다.</p> <p>우리공장은 동네 어귀에 있고 도로위에 있으며 취락지구 경계에 있습니다 조상남께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키신 땅이기도 합니다.</p> <p>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킬것입니다 000-0 000-0 000-0 000-0은 빼주시고 원하는 분들 토지만 수용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답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p>	<p>○본 사업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 및 공공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고 충분한 기반시설과 편익 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의견을 주신 보상, 재정착방안 등에 대한 사안은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책이 마련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p>	
강OO 외3명	<p>1.토지이용계획(안) 녹지(공원) 비율 11.3%로 법적 기준 12% 이상에 미달하고 타 지역 공공택지개발지구 녹지 비율 20~30% 대비 현저히 낮음</p> <p>2.100만평 이상의 공공개발에서 도서관 부지가 누락됨</p> <p>3.탕정 해체지역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계획한다는 개발의 배경 및 목적에 맞지 않게 난개발이 중점 진행중인 취락지구를 배제한 지역지정으로 기형적인 지구개발 및 입주민 주거환경 악화 예상됨 (별첨 1,2)</p> <p>4.탕정계획지구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매곡천을 중심으로 공원, 녹지축 설정 기본방향에 반하여 일부 구간 녹지축 단절 및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동선 위협(별첨2)</p> <p>5.상기 내용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드시 반영 할 것</p>	<p>○토지이용계획(안) 공원·녹지율은 28.8% (하천등 포함)으로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적절한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토록 할 계획임.</p> <p>○향후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도서관 부지 등의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임.</p> <p>○해체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구상(안)을 수립 및 아산시에 제시하여 기반시설 연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p> <p>○향후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녹지축 연결 및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유OO	<p>○상가명 성원특장은 탕정면에 사업자를 내어 10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거래처를 유지하고 있으며 없는 살림에 공장을 조금씩 투자하여 늘려가고 있습니다. 성원특장이라는 사업이 특수차량을 상대로 일을 하다보니 많은 부품 보유와 그 부품들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관계로 도시개발이 되어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50t 이하 모든 특장차가 오고 가는 진입로 확보 주차장 확보 공장 내부 구조가 확보된 상황에서 이사기간만 2달에서 3달이 소요가 된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고려해볼 때 개발을 함으로 인해 삶의 질이 더 향상 된다면 좋겠지만 자영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p> <p>정착하여 먹고 살라고 밭 비품 치고 있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p>	<p>○본 사업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 및 공공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고 충분한 기반시설과 편익 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의견을 주신 보상, 재정착방안 등에 대한 사안은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책이 마련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p>	
한OO	<p>○주민의 생계대책을 최소한도 고려하지 않는 LH공사의 강제 수용에 절대 동의 할 수 없고, 실거래 매매가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개별 공시지가 또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p> <p>취락지구를 배제한 지역지정으로 기형적인 지구 개발은 난 개발로 개발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p> <p>위와 같은 이유로, 탕정면 호산리 000-0, 000-0, 000-0, 000-0은 이 개발 구역으로부터 배제시켜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p> <p>국가가 땅장사 하면 안 되지요! 이 곳이 공산사회인지, 사회주의 국가 입니까?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p>	<p>○본 사업은 용도지구, 용도지역 등 명확한 경계설정 사유를 바탕으로 구역경계를 제안하였고 취락지구의 경우 형평성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외되었음. 의견 주신 보상금 산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인된 감정평가업자(3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진행 될 예정임.</p>	
배OO	<p>1.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p> <p>2.또한 취락지구는 주거도 안하면서 상가만 덩그라니 있는 건물도 취락지구라고 구분하신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p>	<p>○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분들과의 소통 창구를 운영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음.</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배OO (계속)	<p>3.동산리수용 지구 내에 있는 동네 주민들의 환경은 지구 밖의 다른 취락 지구와 다른 환경임을 감안하시어 취락지구 주변에 생활대책의 수단인 농경지를 제척시켜 주십시오.</p> <p>4.같은 블록에서 기준이 어디는 도로,어디는 용도지역, 어디는 취락지구 등너무도 수용지구 편입대상 기준 설정이 중구난방으로 일괄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일괄성 있는 개발지역 설정을 하여 주십시오.</p> <p>5.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레미콘제조업체, 분진가루가 종일 날리는 탕정농공단지의 업체들을 방치한채 무슨 환경을 논하시는지요? 그러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p>	<p>○본 사업의 구역경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나, 의견을 주신 생활대책 등에 대한 사안은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하여 사업추진 과정 중에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p> <p>○환경유해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실시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세부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예정임.</p>	
안OO	<p>1.주민들의 주거환경 반영하여 재고하십시오. 도시개발 수용지구안에 있는 유일한 동네인 동산리 주민들 개발지역에서 벗어나서 주거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선을 타 동네처럼 안쪽으로 다시 계획해 주세요.</p> <p>2.주민들의 생활환경 반영하여 재고하십시오. 대다수의 주민들의 생계 터전인 농지는 가격이 저렴하여 전면 수용하고 집만 덩그러니 남겨놓은 설계 잘못된 설계입니다. 생활터전인 전답을 남겨 놓아 주십시오.</p> <p>3.주민들의 교육환경 반영하여 재고하십시오. 체계적으로 개발을 한다며 아이들을 위한 휴식공간 산림녹지, 학생을 위한 도서관,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설 공간을 마련해 놓으셔야지요.</p>	<p>○본 사업의 구역경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나, 의견을 주신 생활대책 등에 대한 사안은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하여 사업추진 과정 중에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p> <p>○향후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아이들을 위한 휴식공간 산림녹지, 학생을 위한 도서관,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설 공간 등의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안OO (계속)	<p>4.주민들의 문화환경 반영하여 재고하십시오 기존주민들이 대다수의 노령입니다. 노인들의 휴식과 교양, 체력단련, 치매예방등을 위해 필요한 문화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p> <p>5.공해를 일으키는 주변환경도 재고하십시오. 아산레미콘, 동서산업, 등 심한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를 그냥 두고 무슨 개발입니까? 공해 유발업체들 이주시켜 주십시오.</p>	<p>○향후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노령층을 위한 문화공간 등의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p> <p>○환경유해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실시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세부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예정임.</p>	
이OO 외 1명	<p>1.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p> <p>2.다른 취락 지구는 도로를 기준으로 수용지구를 정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살고있는 동산리는 왜 취락지역만을 기준으로 하여 빼뺄빼뺄하여 보기 흉한 경계선을 그어서 흉한 그림을 그리셨나요? 동산리 땅이 탐나셨어요?</p> <p>3.수준 높은 설계사들이 도시개발 계획 그림을 그리셨다면 수준 높은 개발은 이렇게 기준도 빼뺄, 잣대도 빼뺄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며 극심한 반대를 하는 명분을 만들어 주십니까?동일한 기준을 요구합니다.</p> <p>4.1000세대 가까운 세대가 거주하는 동산리를 수용지구 안에 거주하는 유일한 취락지구입니다. 다른 동네와 동일하게 취락지구 밖으로 난 도로를 기준으로 재설계하시던가 아니면 용도지역으로 기준하여 수용지구 밖의 동네로 살게하여 주십시오.</p> <p>5.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레미콘제조업체, 분진가루가 종일 날리는 탕정농공단지의 업체들을 방치한채 무슨 환경을 논하시는지요? 그러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p>	<p>○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분들과의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음.</p> <p>○본 사업은 용도지구, 용도지역 등 명확한 경계설정 사유를 바탕으로 구역 경계를 제안하였고, 취락지구의 경우 형평성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외되었음.</p> <p>○환경유해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실시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세부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예정임.</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모O	<p>1.개발사업상의 효율성 문제(토지이용 효율성)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 1리의 서남측에 위치하고, 삼성로에 인접한 필지(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000,000,000,000,000,000,000,000을 포함하는 필지를 말함, 이하 '해당 필지'라 칭함)는 현재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상에서 개발 구역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필지는 동서간 수직높이차가(level 차이)심한 지역입니다.</p> <p>이에 따라 해당 필지를 개발 시에 상당량의 성토가 필요하거나, 축대 등을 쌓아야 하는 위치로 보입니다. 해당 부지에 성토 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축대를 사용시 장기적으로 안전상의 위험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용소요와 장기적인 위험성을 감안하였을 때, 해당필지의 개발 사업의 효과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p> <p>2.동산 1리 자연취락지구의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p> <p>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1리(이하 "동산 1리") 서측에 위치한, 삼성로에 인접한 부지(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000전,000전,000전,000,000전,000,000전,000,000답,000답,000답,000답을 포함하는 필지를 말함, 이하 "위의 필지"라 칭함)는 전략영향환경평가초안에 의하면 "공동주택용지"로 공급될 계획입니다.</p> <p>위의 필지는 동산 1리의 많은 민가가 존재하는 자연취락지구의 서측에 위치합니다. 위의 필지가 공동주택으로 개발될 예정이기에, 본 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용적률인 200%를 고려하였을 때 위의 필지는 수직적으로 매우 높은 공동주택이 건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현 사업단계는 구역지정 단계로 해당 구역 내 세부적인 부지용도 및 부지계획고는 향후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검토할 예정입니다.</p> <p>○ 의견을 주신 동산1리 자연취락지구의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향후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그 영향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p>모O (계속)</p>	<p>이는 동산 1리 자연취락지구에 위치한 주거의 대부분의 동측 조망권과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와 기존 자연취락지구 위치한 주거의 고저차 때문에 심한 스카이라인의 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위의 필지의 도시개발 계획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p> <p>3.형평성 문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1리 북측에 위치한 자연취락지구는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반면, 남측에 위치한 동산 1리의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구역은 개발사업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동산1리 지역은 수용되는 부분과 수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해당지역의 개발구역으로의 포함이 어떠한 법령이나 법리적 판단에 의해 그렇게 나뉘었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저번 주민 의견 수렴시 답변과 같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그건 이미 민원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어떤 세부적인 근거에 의하여 구역을 설정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4.동산1리 근린생활시설 수용관련 생계 문제 또한, 아산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동산 1리 남측 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 수용되게 된다면, 근린생활시설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특히 그중에는 100억을 들여 건축한 건축물도 있으며, 최근 준공을 완료한 건축물도 존재합니다.</p>	<p>○본 사업의 구역경계는 도시개발업무 지침 제2절 1-3-2-1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p> <p>○의견을 주신 보상, 재정착방안 등에 대한 사안은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과정 중에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할 계획임.</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p>모O (계속)</p>	<p>해당 지역을 개발할 경우 지역 주민에게 수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며, LH측도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p> <p>이는 주민들에게도 크나큰 재산상의 손해이며, LH측의 손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산 1리 남측 지역의 근린생활시설들이 위치한 구역은 아산탕정 2지구 개발사업에서 포함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바입니다.</p> <p>5. 매우 기형적인 형태의 획지 구성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동산 1리 지역은 농심과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하고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기에 남북으로 매우 긴 형태의 기형적인 형태의 획지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형태의 획지구성은 도시계획상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설계로 판단됩니다.</p> <p>6. 자연보전지역의 환경피해 문제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상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 1리가 개발사업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산 1리 지역의 개발 사업 부지는 부지의 동측에 자연보전지역이 위치함 상태입니다. 자연보전지역을 맞닿은 곳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개발시에 자연보전지역에의 자연 파괴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먼저 해당 지역 개발 타당성 및 환경 파괴 영향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수치를 포함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위의 사항을 명확하게 해명하기 바랍니다.</p>	<p>○ 본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개발 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확정될 예정이며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지자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p> <p>○ 계획지구 동측(동산1리 동측) 임야 지역은 용도지역 상 보전관리지역이며, 금회 계획지구로부터 약 60m이 격되어 있음. 금회 계획은 기본계획으로 현재 구체적인 토공량 등의 공사계획이 없어 개략적인 공사시 대기질 영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공사시 비산먼지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지역 살수, 세륜·세차설 운영, 가설방진시설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음. 추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환경영향평가지구체적인 영향예측과 그에 따른 저감대책을 제시토록 하겠음.</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모O (계속)	<p>7.결론</p> <p>위와 같은 사유로 동산 1리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 계획은 매우 부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개발 사업에 의한 공익보다 기존 주민들의 피해가 현저히 커 보이므로, 이에 따라 아산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동산 1리 지역을 제척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p>		
모OO	<p>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2.OOOOO 교회는 한국기독교침례회에 속한 교회로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OOO에 위치하고 있습니다.</p> <p>현재 OOOOO 교회에서 수백 명의 교인들, 수백 명의 아산 시민들이 종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p> <p>3.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자료를 열람한 결과, OOOOO 교회가 위치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OOO이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OOOOO 교회는 종교시설로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OOOOO 교회는 아산지역의 신앙의 본거지 역할을 수행하며 아산 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p> <p>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OOOOO 교회가 수용된 후에도 계속 존속하려면, 결국은 아산 시민들이 다시 돈을 부담하여 교회 부지를 마련하고 교회 건축비를 모아 다시 건축하여야 하고, 이는 결국 아산 시민들의 신앙권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OOOOO교회는 비영리조직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소유자들과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p>	<p>○본 사업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 및 공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주변 연구개발 및 산업시설과 연계한 광역경제권(충청권)의 성장거점 도시권 육성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본 사업의 구역경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다만 향후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상의 문제, 존치 건축물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p>모OO (계속)</p>	<p>이와 같이 OOOOO 교회에 위치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OOO의 도시개발사업에의 수용은, OOOOO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백 명에 달하는 아산 시민들의 종교 생활의 자유를 강탈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일입니다.</p> <p>4.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자료를 열람한 결과, OOOOO 교회가 위치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OOO은 해당 사업에서 “단독주택용지”로 개발 및 공급 예정 되어 있습니다. OOOOO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백명의 교인들, 수백 명의 아산 시민들이 종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p> <p>이를 사업 시행자가 강제 수용하여 “공공시설”도 아닌 “단독주택용지”로 몇몇의 개인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p> <p>5.금번 도시개발사업이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OOOOO교회가 사업시행자측에 수용될 경우, 1.토지에 대한 보상은 기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에 기존토지구매가격에 심히 부족한 금액을 보상받고, 2.최근에(2019.10) 신축한 건축물은 감가상각이 고려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으며, 3.보상금에 대한 양도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OOOOO 교회의 심대한 재정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와 같이 OOOOO 교회가 강제수용당하고, 수용에 의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더 이상 교회로서 기능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재정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p>모OO (계속)</p>	<p>6.또한 이하의 서울시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 (문서번호: 뉴타운 사업2담당관-8497/2009.9.27.)를 참고 하면, “서울시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 방안”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존치”가 되도록 검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 수립 ○이전계획수립 기준 이전계획 수립시 관련 종교단체와 협의 기존 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대토” 원칙 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 조합 부담(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물품에 대한 제작설치비 고려) 사업기간 동안 종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 마련, 이전 비용 등 조합 부담 이와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발사업시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존치”를 고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존치가 어렵다면 종교시설인 만큼 종교시설에 합당한“대토”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p> <p>7.귀 사에서 금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제시한 OOOOO 교회(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OOO)의 수용은 첫째, OOOOO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백 명에 달하는 아산 시민들의 종교 생활의 자유를 강탈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일이고, 둘째, 해당 위치가“단독주택용지”로 개발 및 공급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해당 토지의 수용은 공익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모OO (계속)	<p>셋째, 강제수용은 OOOOO 교회가 다시 교회로서 기능하지 못할 정도의 심대한 재정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일이고 셋째, 다른 지자체에서의 정교 시설에 대한 존치를 우선으로 하는 처리방안 등을 참고하여 OOOOO 교회의 존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재검토해주시길 바라면서 OOOOO 교회 교인들의 서명을 첨부하여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p> <p>감사합니다.</p> <p>붙임: OOOOO 교회 아산탕정2지구 개발사업에서의 존치관련 교인 서명 끝.</p>		
송OO	<p>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2.OOOOO 교회는 한국기독교침례회에 속한 교회로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OOO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OOOOO 교회에서 수백명의 교인들, 수백명의 아산 시민들이 종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p> <p>3.OOOOO 교회가 위치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OOO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2019년 5월 29일에 나왔습니다. 이에 건축시공을 시작하였고, 해당 부지가 아산 탕정 2지구 개발 사업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p> <p>4.애초에 건축 허가가 아산시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건축물을 시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지가 아산탕정 2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면, 역시 건축물을 시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p>	<p>○본 사업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 및 공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주변 연구개발 및 산업시설과 연계한 광역경제권(충청권)의 성장거점 도시권 육성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본 사업의 구역경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다만 향후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상의 문제, 존치 건축물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p>송OO (계속)</p>	<p>5.또한 OOOOO 교회는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OOO는“답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 시에 OOOOO 추가적인 금전상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LH측에서도 수용 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아산탕정2지구 개발 사업 계획(안)에서는 이를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대비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p> <p>6.아산시는 개발사업의 관할관청으로서 탕정 2지구 개발 계획에 해당 부지가 포함되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책임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아산탕정 2지구 개발 사업 계획에 따르면 OOOOO 교회의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가 예상되는데, 이를 감안하여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OOO부지를 개발 사업에서 제척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p>		
<p>모OO</p>	<p>1.아산탕정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르면 본 아산탕정2지구 개발 계획은 100만평(3571810제곱미터)에 이르는 면적에 대한 대규모 개발입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개발계획상에 종교시설용지가 단 5개소, 약 3200평(10658제곱미터)만이 공급될 예정입니다.</p>	<p>○본 사업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 및 공공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주변 연구개발 및 산업시설과 연계한 광역경제권(충청권)의 성장거점 도시권 육성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본 사업의 구역경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다만 향후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상의 문제, 존치 건축물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p>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p>모OO (계속)</p>	<p>2. 이는 현재 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존재하는 교회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급부지의 수가 적고, 총면적도 적게 공급 예정임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기독교 교회 외에도 다양한 종교의 종교시설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종교의 여러 종교 시설을 수용하기에도 종교용지가 매우 턱없이 적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아산탕정2지구 개발사업에서 매우 적은 종교용지가 공급되고 있는 것은 종교에 대한 배려가 심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p> <p>3. 이에 따라 앞으로의 아산탕정2지구 개발 계획 상에서 종교 부지를 더 많이 공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종교 부지를 더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관련 법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p>		
<p>안OO</p>	<p>○ 지난 탕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신도시개발을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 동식물보다도 생활여건이 형편없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p> <p>또한 현재 계획중인 아산디지털산업단지과 음봉일반산업단지까지 조성되면 덕지1리 마을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p> <p>LH와 아산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덕지주민이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이주자택지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p>	<p>○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에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동·식물뿐 아니라, 대기환경, 생활환경 등의 영향을 검토할 계획임. 금회 제시된 주민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p> <p>○ 본 사업은 현재 구역지정 단계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개발계획·실시계획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동 단계에서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편입을 원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주민동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p>	

2.4.2 설명회 주민 의견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정00	○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실시계획시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생활환경 및 사회환경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00	○계획지구와 인접한 덕지리 마을에 공사시 비산먼지의 영향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사시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살수, 방진망 등이 있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지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덕지리마을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으나 경계 설정에 대하여 마을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하여 취락지구는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함. 다만, 편입을 원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동의서 제출 시 사업추진과정에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00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환경, 교통환경, 교육환경 등 실생활과 연관되어있는 내용의 검토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 실시계획시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생활환경 및 사회환경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환경영향평가지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00	○계획지구 서측의 취락지역과 임야를 포함하여 개발구역을 정형화하고, 녹지공간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으나 경계설정에 대하여 마을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하여 취락지구는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함.	
	○동산1리 마을의 제척으로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로서의 기능수행이 안됩니다. 구역지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으나 경계설정에 대하여 마을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하여 취락지구는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인00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답의 수용으로 농업종사자들의 생계수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으나 경계 설정에 대하여 마을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하여 취락지구는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함. 또한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중심에 위치한 동서산업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이 상당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산업이 위치한 아산탕정 농공단지 주변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누적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지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이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택배를 수용지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 및 공공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고 충분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의견을 주신 제척 등에 대한 사안은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과정 중에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한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경계인 1300평(호산리 000-0, 000-0~0) 대한 땅을 수용지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 및 공공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고 충분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의견을 주신 제척 등에 대한 사안은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과정 중에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주민1	○“OOOOO교회”를 수용지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 및 공공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고 충분한 기반시설과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의견을 주신 제척 등에 대한 사안은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과정 중에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주민2	○동산1리 입구의 상업지역 전체를 수용지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 및 공공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고 충분한 기반시설과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의견을 주신 제척 등에 대한 사안은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과정 중에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주민3	○동산1리마을 주변 농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으나 경계 설정에 대하여 마을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하여 취약지구는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함. 또한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임	
주민4	○오랜동안의 행위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제한 등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2.4.3 공청회 주민의견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인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 설정이 기형적이며, 역세권과 신불당 뒤편 토지 제척 사유가 공금함. ○ 자연부락 9곳이 제척되고, 경계면 녹지계획으로 인하여 주변 임야 개발 불가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예상됨. 주변 임야 포함을 요구함. ○ 지역주민들의 거주환경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설계에 반영 요구함. ○ 전, 답만 수용함에 따라 주변 마을 주민들의 생계수단이 없음. 마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생활할 수 있는 토지를 마을 주변에 마련 요구함. ○ 소음과 분진이 심한 동서산업 공장 이전을 요구함. ○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는 구역 설정 정형화시 찬성함. ○ 사업 추진의 신뢰성 문제 및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문제 제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으나 경계 설정에 대하여 마을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하여 취락지구는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임 ○ 동서산업이 위치한 아산탕정 농공단지 주변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누적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지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초안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검토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할 계획임. 	
류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마을 중 동산 1리는 구역 설정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됨. 마을 공동체와 주민 생계를 위하여 주변 농지를 제척시켜 줄 것을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으나 경계 설정에 대하여 마을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하여 취락지구는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또한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임. 	
유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산1리 상가변영회원 소유 토지는 지가가 높아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적 측면에 큰 부담이 되므로 상가변영회원 소유토지 제척을 요구함. ○ 상가변영회원 토지는 근린상업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유일한 계획관리 지역임. 이러한 지역을 부수고 근린상가 지역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환경파괴임. ○ 탕정 재래시장인 동산1리 상가변영회는 유지되어야 함 ○ 동산1리 상가변영회 라인 30필지 중 15군데는 수용하고, 15군데는 빠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으나 경계 설정에 대하여 마을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하여 취락지구는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김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계획(안) 녹지비율 11.3% 법적 미달임. ○ 100만 평 이상의 공공개발 도서관, 광역교통망을 누락함. ○ 매곡천 중심공원, 녹지 축 일부 구간 단절로 주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동선 및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협함. ○ 기형적인 지역지정으로 추가 난개발을 조장함. ○ LH공사 사업 신뢰성 상실 및 요식적인 의견수렴임. ○ 10년 전보다 낮은 토지공시지가 현실화가 필요함. ○ 주민, 아산시, LH 협의체를 구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계획(안) 공원·녹지율은 28.8% (하천등 포함)으로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적절한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토록 할 계획임. ○ 향후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도서관 부지 등의 반영여부 및 교통대책을 검토할 예정임. ○ 향후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녹지축 연결 및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본 사업의 구역경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초안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검토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할 계획임. 	
이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택배 부지 제척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 및 공공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고 충분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의견을 주신 제척 등에 대한 사안은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과정 중에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구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00	○호산리 000-O, 000-O, 000-O, 000-O 공장 제척을 요구	○본 사업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 및 공공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고 충분한 기반시설과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의견을 주신 제척 등에 대한 사안은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과정 중에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이00	○동산2리는 현재 토지이용계획 상 산업 시설(공장부지)로 둘러싸이게 되고 인근 폐수처리장까지 있음. 현재 마을 도로개선계획도 보류되어 편입을 원함.	○본 사업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주변 개발사업지구 등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으나 경계 설정에 대하여 마을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하여 취약 지구는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다만, 편입을 원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안00	○덕지리 마을은 현재 토지이용계획 상 산업단지로 둘러싸여 편입을 요구하며, 수용이 안 될 경우 주민들의 생계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요구함.	○본 사업은 탕정지구 해제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추진되는 민간의 무분별한 개발문제에 시급히 대응하고, 공원·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역경계에 인접한 거주민의 주거환경과 생계대책은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최00	○호산리 산 00-00번지(보전산지) 편입 요구, 수용이 안 될 경우 벌목, 농업 등 영업행위를 위한 도로 개설 등을 요구함.	○본 사업은 탕정지구 해제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추진되는 민간의 무분별한 개발문제에 시급히 대응하고, 공원·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역경계에 인접한 거주민의 주거환경과 생계대책은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